

15 건설업 등록

- 개요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일반 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25일	20일
구비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4) 대표자 및 임원(이사) 명단(등록기준지, 현주소 포함)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1항제1호의2)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진단평가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7) 출자예치증명원 (8) 예금거래내역서 (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0) 사무실 자가 입증서류 or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전경사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11) 시설·장비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사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12)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서본 (13) 사업장 가입자 명부 (14)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1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 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4) 대표자 및 임원(이사) 명단(등록기준지, 현주소 포함)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1항제1호의2)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진단평가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7) 출자예치증명원 (8) 예금거래내역서 (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0) 사무실 자가 입증서류 or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전경사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11) 시설·장비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사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12)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서본 (13) 사업장 가입자 명부 (14)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1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 스�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